

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. 2. 8
- 회부일자 : 2000. 2. 9

3. 제안이유

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6521호, '99. 8. 7)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(제2515호, '99. 9. 7)의 개정으로 현실에 불부합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공인의 신조, 개각 승인제도를 등록·재등록 제도로 바꾸고 전자관인의 등록·관리규정 신설(제1조 제4조)
-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새김을 원칙으로 하되, 그 한번의 길이를 3cm이하(종전 2.7cm)로 하고 도지사가 직급에 따라 차등 할 수 있게 규정 (제5조)
- 전자관인은 정보통신과장이 관리하고 전자문서 관인날인은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하도록 규정 (제12조, 제15조)
-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직 변경

- 자치행정국장 ⇨ 총무과장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- 공인의 신조 개각 승인제도를 등록·재등록 제도로 전자관인의 등록·관리규정 신설과
- 공인의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2.7cm 이하에서 3cm 이하로 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이며
- 전자관인은 정보통신과장이 관리하고, 전자문서 확인은 처리과의 문서 심이관이 하도록 하며
- 인영의 보존등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치행정국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 하려는 것으로써

이는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) 및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